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 - 592호

「광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산업통상부장관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도시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서 노천채굴을 제한(단,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한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예외적으로 노천채굴 허용)하는 것으로 광업법이 개정('26.8.11.) 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에 허가 신청방법 및 양식 등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 광업법 제44조제4항에 규정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서의 노천채굴허가에 대한 신청 및 허가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 (안 제22조의2)

나. 이에 대한 신청서 및 허가증 서식을 신설함. (별지 제30호의2, 제30호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광물자원팀
- 전자우편 : leejunbok@korea.kr
- 팩스 : 044-203-47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광물자원팀(전화 (044) 203-5256, 팩스 (044)203-47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